

1. 개정이유

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완화된 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원거주민의 범위를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는 등 보호구역 내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며, 그간 유권해석으로 보호구역 내 입지를 허용해 오던 수도관로 등의 시설을 행위허가 기준상에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원거주민의 대상 확대(안 제2조제4호마목 신설)

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위 제한을 완화한 제도 취지에 따라 그 자녀 세대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,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도 원거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규정

나.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정비

- 1) 수도관로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(안 제12조제1호나목2) 개정)
- 2) 수도관로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(안 제12조제3항라목6) 신설)
- 3) 양봉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(안 제12조제3호카목 신설)
- 4) 보호구역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상의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의 설치가 제한되어 생기는 농업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

위해, 일정 요건 하에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허용(안 제12조제3호타목 신설)

5) 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, 법령 적용에 관한 일반 국민 및 일선 지방정부의 혼선 방지(안 제12조제4호바목 및 사목 개정)

다. 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에 맞추어 수질검사기록부 서식의 현행화(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)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

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보호 구역에서 출생한 후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한 사람

제12조제1호나목2) 중 “전기설비”를 “전기설비 및 「수도법」에 따른 수도 중 관로(管路)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에 6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) 「수도법」에 따른 수도 중 관로(管路)

제12조제3호카목을 파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파목(중전의 카목)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차목”을 “타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바목 중 “(기도원은 제외한다) : 기준”을 “(교회, 성당, 사찰, 수도원, 수녀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: 기준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사목 중 “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”을 “제실(祭室), 그 밖에 이와 유사하다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”로 한다.

카. 벌통 및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·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 :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

타. 이동식 간이화장실 : 보호구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「공

중화장실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농지에 설치하는
경우로서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
바닥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

제15조제2호나목 본문 중 “종교집회장(기도원은 제외한다)”을 “종교집
회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원수(□취수구□착수정)수질검사기록부(총괄)

수도사업자		취수장 명 칭		취수량	m³/일	취수원 종 류		취수원 명 칭	
보호구역	①명칭:	②면적: km²				③관리청:		검사기관	

항 목	단위	전년평균	연평균	최고	최저	비고
수소이온 농도						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	mg/L					
총유기탄소	mg/L					
총인	mg/L					
클로로필-a	mg/L					
부유물질량	mg/L					
용존 산소량	mg/L					
대장균군	총 대장균군	균수/100mL				
	분원성 대장균군	균수/100mL				
카드뮴	mg/L					
비소	mg/L					
시안	mg/L					
수은	mg/L					
납	mg/L					
크롬	mg/L					
유기인	mg/L					
다이아지논	mg/L					
파라티온	mg/L					
페니트로티온	mg/L					
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	mg/L					
음이온 계면활성제	mg/L					
불소	mg/L					
셀레늄	mg/L					
암모니아성 질소	mg/L					
질산성 질소	mg/L					
카바릴	mg/L					
1,1,1-트리클로로에탄	mg/L					
테트라클로로에틸렌	mg/L					
트리클로로에틸렌	mg/L					
페놀	mg/L					
보론	mg/L					
노말렉산 추출물질(동식물유지 류)함유량	mg/L					
사염화 탄소	mg/L					
1,2-디클로로에탄	mg/L					
디클로로메탄	mg/L					
벤젠	mg/L					
클로로포름	mg/L					
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	mg/L					
안티몬	mg/L					
1,4-다이옥세인	mg/L					
폼알데하이드	mg/L					
헥사클로로벤젠	mg/L					
철	mg/L					
망간	mg/L					

※ 작성방법

1. 보호구역명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작성합니다.
2. 취수원의 종류는 하천수·호수·복류수·지하수·해수 등을 적습니다.
3. 취수원 명칭은 하천명·호소명·필지명·도서명 등을 적습니다.
4. 이 기록부는 월별 기록부와 함께 묶습니다.

작성자

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:

원수(□취수구□착수정)수질검사기록부

수도사업자		취수장 명칭		취수량	m ³ /일	취수원 종류		취수원 명칭	
보호구역	①명칭:	②면적:	km ²	③관리청:		검사기관			

항 목	연평균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수소이온 농도													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													
총유기탄소													
총인													
클로로필-a													
부유물질량													
용존 산소량													
대장균군	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												
카드뮴													
비소													
시안													
수은													
납													
크롬													
유기인													
다이아지논													
파라티온													
페니트로티온													
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													
음이온 계면활성제													
불소													
셀레늄													
암모니아성 질소													
질산성 질소													
카바릴													
1,1,1-트리클로로에탄													
테트라클로로에틸렌													
트리클로로에틸렌													
페놀													
보론													
노말핵산추출물질(동식물유지류) 함유량													
사염화 탄소													
1,2-디클로로에탄													
디클로로메탄													
벤젠													
클로로포름													
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													
안티몬													
1,4-다이옥세인													
폼알데하이드													
헥사클로로벤젠													
철													
망간													

※ 작성방법

1. 대장균군의 단위는 군수/100mL, 수소이온 농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mg/L로 합니다.
2. 보호구역명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작성합니다.
3. 취수원의 종류는 하천수·호소수·복류수·지하수·해수 등을 적습니다.
4. 취수원명칭은 하천명·호소명·필지명·도서명 등을 적습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호·제3호·제4호 및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“원거주민(原居住民)”이란 상 수원보호구역(이하 “보호구 역”이라 한다)에 거주하고 있 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~ 라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<u>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출 생한 후 그 구역에 계속 거 주한 사람</u>
제12조(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 모)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 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. (생 략)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	제12조(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 모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

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.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.

- 1) (생략)
- 2) 도로·철도의 건설 또는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
다. (생략)
라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

- 1) ~ 5) (생략)

<신 설>

마. ~ 사. (생략)

2. (생략)
3. 소득기반시설 : 보호구역에서

-----.

-----.

- 1) (현행과 같음)
- 2) -----

----- 전기설비 및
「수도법」에 따른 수도
중 관로(管路)-----

다. (현행과 같음)
라. -----

- 1) ~ 5) (현행과 같음)
- 6) 「수도법」에 따른 수도
중 관로(管路)

마. ~ 사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

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

가. ~ 차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(축사는 제외한다)로서 지방자치단체(특별시·광역시와 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

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

카. 별통 및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·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 : 1
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

타. 이동식 간이화장실 : 보호구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「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바닥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

파. -----
- 타목----. -----

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.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 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) ~ 3) (생략)	1) ~ 3) (현행과 같음)
4. 주민공동이용시설: 보호구역 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	4.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~ 마. (생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바. 종교집회장(기도원은 제 외한다):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하	바. -----(교회, 성당, 사 찰, 수도원, 수녀원을 말한 다. 이하 같다): 기존----- -----
사. 효열비(孝烈碑), 사당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	사. ----- 제실 (祭室), 그 밖에 이와 유사 하다고 특별자치시장·특 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 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시 설
아. ~ 타. (생략)	아. ~ 타. (현행과 같음)
5. ~ 9. (생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행위제한의 완화) 제14조	제15조(행위제한의 완화) -----

에 따라 지정·공고된 환경정비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·증축 또는 용도변경: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, 지방자치단체(가목에 따른 신축·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종교법인(나목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)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

가. (생략)

나. 종교집회장(기도원은 제외한다)의 신축·증축 또는 기존 공장·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. 다만,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

1.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종교집회장

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. ~ 바. (생략)	----- -----. 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
---	--